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1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개정사항 반영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각 개별 법령 인용 조문 정비로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 각 개별 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6조)

- 감면 대상자 각 개별 법령의 『등록 및 결정』 조항 인용

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개정내용 반영(안 제6조, 별표 1)

- 감면 대상자 규정(안 제6조제4항 신설)
-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정비(안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 ※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 등 항목 신설

다. 관계법령 사항 반영(안 제1조, 별표 1)

- 목적(안 제1조, 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 근거 법령 정비)
-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항목 삭제(「사도법 시행규칙」 반영)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3) 「사도법」 및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관련 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4. 16. ~ 5. 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2020년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5.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37조, 제139조 및 개별 법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른”을 “따라 등록 및 결정된”으로,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으로,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3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으로,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을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2) <삭제>	-	-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장 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매	35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1건	350원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건	350원	
3)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350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	800원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	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1건	1,000원	
2) 생산실적 증명	1건	350원	
3) 실수요자 증명	1건	350원	
4)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1건	350원	
5) 원자재(시설재) 증명	1건	350원	
6)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7)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1건	350원	
2) 무적증명	1건	350원	
3) 제적 기재사실 증명	1건	350원	
4) 거주에 관한 증명	1건	350원	
5)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6) 영문국제결혼증명 및 재발급	1건(1매)	3,3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	비고
7)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1통	400원	
8)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1통	500원	
9)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	1건	300원	
10)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명	5,000원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1건	350원	
2)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	1건	350원	
3)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450원	
4)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5,500원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1필지	8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칼라)	1필지	1,500원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흑백)	1필지	1,000원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	1필지	100원	
바.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50원	
아. 공부열람			
2) 각종 공부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자.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 문서의 열람	1건1회	150원	
2) 문서의 정정	1건	150원	
3) 문서의 복사	1매	150원	
차.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당	6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15,000원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원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9)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2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23) 권리면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50원	
24) <삭제>	-	-	
25)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	1건	2,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	비고
26) 하천부지 점용허가	1건	1,000원	
27)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원	
28)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1건	100,000원	
29)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장소이전)	1건	40,000원	
3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3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3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	1건	5,000원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7)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8)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9)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10)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11)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원	
12)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	3,000원	
1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5,000원	
14)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	1건	550원	
15)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종 목	단위	수수료	비고
16)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1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원	
18)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원	
19)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원	
20)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21) 건설기계 저장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22)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23)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1건	20,000원	
24) 치과기공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25)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3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36)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7) 영화업 신규 신고	1건	20,000원	
38)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4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 삭제 <2000.10.31>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종목	열람·시청	단위	수수료
문서·도면 ·사진 등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무료 1,000원
필름·테이 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 시청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건(30분 기준)마다	1,500원 700원
	나.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편(30분 기준)마다	1,500원 700원
	다.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1편(30분 기준)마다	3,500원 2,000원
	라. 사진필름 열람	1장 1장 초과마다	200원 50원
마이크로필 름·슬라이 드 등	가.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10컷 초과 시 1컷마다	500원 100원
	나.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전자파일	가.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무료 1,000원
	나. 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시청 ·청취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500원 500원

종목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단위	수수료
문서·도면 ·사진 등	문서·도면·사진 등 사본 (1매 기준)	A3 이상 1장 초과마다 B4 이하 1장 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필름· 테이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1건마다	5,000원 3,000원
	나.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1편마다	5,000원 3,000원
	다. 사진필름 1) 사진필름 인화(1장 초과마다) 3" × 5" 5" × 7" 8" × 10"	1컷마다 3" × 5" 5" × 7" 8" × 10"	500원 200원 300원 400원
	2) 사진필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컷마다	6,0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가. 마이크로 필름 1) 사본(종이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1장초과마다 B4이하 1장초과마다	300원 200원 250원 150원
	2) 마이크로필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롤마다	1,000원
	나.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컷마다	3,000원

종목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단위	수수료
전자파일	가. 문서·도면·사진 등 1) 문서·도면·사진 등 사본 2) 문서·도면·사진 등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무료
	나.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5,000원 2,500원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37조, 제139조 및 개별 <u>법령</u>----- ----- ----- -----.</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p>	<p>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p>
<p>3.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u>유(가)족</u>이 신청하는 증명</p>	<p>3. ----- ----- 따라 등 <u>록 및 결정된</u> ----- ----- <u>유족 또는 가족</u>----- -----</p>
<p>4.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p>	<p>4.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p>
<p>5. (생 략)</p>	<p>5. (현행과 같음)</p>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생략)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1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③ (생략)

<신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 관련)

6. -----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또는 가족-----

7. -----
-----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또는 가족-----

8. (현행과 같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 제9호-----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 다. (생략)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마. ~ 차. (생략)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23) (생략)		
24)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1건	550원
25) ~ 32) (생략)		
나. (생략)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4종)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 6) (현행과 같음)		
7)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1통	400원
8)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1통	500원
9) 주민등록표의 열람 (전입세대 열람을 포함)	1건	300원
10)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명	5,000원
마. ~ 차. (현행과 같음)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23) (현행과 같음)		
<삭제>	-	-
25) ~ 3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징수과 안양순 (☎ 02-3153-8792)